

한국항공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학.연협동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한국항공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학·연협동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연구원'라 한다) 의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약정서에 명시된 본 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간의 학·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이 위원회는 대학원장외에 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는 3인 내지 5인의 대학교 전임교수와 연구원의 인력개발부서의 장 외에 연구원장이 임명한 3인 내지 5인의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양측은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가 결정하는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의 학칙을 준용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전공분야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정 및 세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양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여 재의결 한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교 제 규정과 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